

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출일 : 2001. 10. 6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1. 10. 15

다. 의안번호 : 제 35 호

라. 상정일자 : 2001. 10. 19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문화복지센터 기구 인력 보강 승인에 따른 기구설치 및 관련업무를 조정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○ 기구폐지 및 설치

- 폐지 :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
- 설치 : 거창군문화복지센터

※종합사회복지관 및 박물관을 문화복지센터로 통합

○ 업무조정

- 재가복지사업 : 복지관 ⇒ 사회복지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기운영 중에 있는 거창군 문화센터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창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행정기구를 설치하고,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,

- 기존의 사업소 조직 중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거창군 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여, 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및 박물관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고,
이와 관련하여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,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소장의 관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

- 기재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이문행 위원 :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거창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중 “종합사회복지관” 명칭 개정이 누락되어 이를 “문화복지센터”로 한다로 개정하여 부칙 제2조 제3항에 추가토록 요구.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-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문화센터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창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행정기구를 설치하고,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,
- 기존의 사업소 조직 중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거창군 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여, 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및 박물관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고,
- 이와 관련하여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, 거창군 종합사회

복지센터 소장의 관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, 그 내용이나 형식등에는 문제가 없으나,

-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중 “종합사회복지관” 명칭 개정이 누락되어 이를 “문화복지센터”로 개정해야 한다는 이문행 위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어
- 이를 본 조례 부칙 제2조 제3항에 추가하여 수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기재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기재생략

〔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〕

심사 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출일 : 2001. 10. 6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1. 10. 15

다. 의안번호 : 제 36 호

라. 상정일자 : 2001. 10. 19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문화복지센터 기구·인력 보강 승인에 따른 정원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○ 기구폐지 및 설치

· 폐지 :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

· 설치 : 거창군문화복지센터

※종합사회복지관 및 박물관을 문화복지센터로 통합

○ 정원승인 : 4명 (5급 1, 7급 2, 9급 1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경상남도로부터 거창군 문화복지센터의 기구 및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

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- 거창군 문화복지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4명의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, 집행기관의 정원을 541명에서 545명으로 변경하고, 총 정원을 551명에서 555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

- 기재생략

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경상남도로부터 거창군 문화복지센터의 기구 및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 4명이 늘어남에 따라, 집행기관의 정원을 541명에서 545명으로 변경하고, 총 정원을 551명에서 555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,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- 기재생략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기재생략